

건신인권센터 운영 규정

2022년 11월 01일 제정 2026년 06월 0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며, 차별,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폭력, 사이버성폭력 및 기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건신인권센터의 설치, 조직, 운영 및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립성) ① 건신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본교 내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구제를 위한 전문기구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센터는 특정 부서, 특정 보직자 또는 사건 당사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총장은 센터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본교의 모든 부서 및 구성원은 센터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조사 또는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설치) 본교에 건신인권센터를 둔다.

제4조(운영원칙) ① 센터는 본교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상담, 성고충상담, 사건 조사, 보호조치, 교육 및 제도개선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단일센터 체계로 운영한다.
② 센터는 피해자 보호, 공정성, 신속성, 비밀유지, 2차 피해 방지, 회복 지원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③ 센터는 사건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상담, 조사, 심의, 조정, 보호조치 및 재발 방지조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한다.

제5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라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차별행위, 괴롭힘, 폭언·폭행,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학습권·

연구권·근로권 침해 및 기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성희롱과 성폭력은 제외한다.

4.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학업·연구 관계 등에서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교육·연구·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 연구, 고용, 인사, 근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성폭력”이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님, 연락, 감시, 주거 등 주변 배회,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8.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모욕, 협박, 따돌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9. “사이버성폭력”이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 불법촬영, 유포, 협박, 합성, 배포, 저장, 전시, 성적 이미지 또는 영상물의 이용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고충상담”이란 대학 구성원이 인권침해, 차별,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폭력, 사이버성폭력 또는 기타 권익침해와 관련하여 상담, 신고, 보호, 절차 안내 및 구제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11. “고충상담소”란 센터 내에서 고충상담의 접수, 상담, 초기 대응, 보호조치, 사건 연계 및 사후지원을 담당하는 내부 기능 단위를 말한다.

12. “고충상담원”이란 센터 내에서 고충상담, 사건 접수, 피해자 보호, 조사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대학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연구원, 연수생 및 기타 본교와 교육·연구·근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4. “피해자”란 인권침해 또는 성고충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15.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성고충 사건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6. “피신고인”이란 신고 또는 인지된 사건에서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7. “사건관련자”란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대리인 등 사건 처리와 관

련된 사람을 말한다.

18. “당사자”란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9. “행위자”란 조사 및 심의 결과 인권침해 또는 성고충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0. “2차 피해”란 사건 처리 과정 또는 그 이후에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대리인 또는 사건관련자에게 신원노출, 비난, 회유, 압박, 보복, 불이익 조치 등 추가적인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관계부서”란 사건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본교의 부서를 말한다.

제6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②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어느 한쪽만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은 본교 내 교육, 연구, 학사, 실습, 근로, 행사, 회의, 출장, 온라인 공간, 정보통신망 및 그밖에 본교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한다.

제7조(구성원의 의무) ① 본교 구성원은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본교 구성원은 차별,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폭력 및 사이버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묵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본교 구성원은 센터의 조사 및 보호조치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 본교 구성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및 사건관련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8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상담 및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소를 둔다.

② 센터에는 고충상담, 조사 지원,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 전문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센터는 사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또는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총괄
2. 사건 접수, 조사 개시, 보호조치, 위원회 회부, 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 총괄
3. 운영위원회, 사건심의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의 소집 또는 구성
4. 예방교육, 실태조사, 홍보, 제도개선 업무 총괄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고충상담소) ① 센터에는 대학 구성원의 고충상담 및 사건의 초기 대응을 위하여 고충상담소를 둔다.

② 고충상담소는 본교의 규모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센터 내부의 통합 상담기능으로 운영한다.

③ 고충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성고충 관련 상담
2. 신고 및 진정의 접수
3. 사건 처리 절차 안내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조치 및 지원 연계
5. 사건의 조사 및 심의 절차 연계
6. 예방교육 및 홍보 지원
7. 사후지원 및 재발방지 관리
8.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고충상담원) ① 센터에는 고충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교원, 직원 또는 전문상담 인력 중에서 센터장이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 신청의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 및 지원기관 연계
3. 신고 및 조사 절차 안내
4.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조사 지원
5. 예방교육, 홍보 및 상담 통계 관리
6. 기타 센터장이 부여하는 업무

④ 본교는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 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전문인력 및 외부전문가) ① 센터는 법률, 상담, 성평등, 장애인권, 디지털성범죄 대응, 학생지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센터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 조사, 심의, 교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센터는 필요한 경우 고충상담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센터의 업무

제1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차별,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폭력, 사이버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 신고접수, 조사 및 처리
2.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3. 신고인, 참고인, 대리인 및 사건관련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4. 행위자에 대한 교육, 조치 및 재발방지
5. 인권 및 성평등 교육, 폭력예방교육, 홍보
6. 인권 의식 및 사건 발생 실태 조사
7. 인권 관련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에 대한 연구 및 권고
8. 사이버 신고창구 운영
9. 그밖에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예방교육) ① 센터는 인권존중과 성평등한 학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②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권 및 차별금지
2. 괴롭힘 예방
3.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4. 스토킹 예방
5. 사이버폭력 및 사이버성폭력 예방
6. 2차 피해 방지
7. 사건 발생 시 신고 및 구제 절차

8. 관련 법령 및 학내 규정의 이해

③ 센터는 매년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신규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고위직·보직자 대상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① 센터는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예방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서에 제도, 정책 및 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관계부서는 제2항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 및 세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교육, 홍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⑦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사건심의위원회) ① 센터는 일반 인권침해 사건의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위하여 사건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사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원, 직원, 학생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사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실관계 확인
 2. 규정 위반 여부 판단
 3. 피해자 보호조치
 4.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5.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고충심의위원회) ① 센터는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또는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성인지 감수성과 사건 처리 전문성을 갖춘 교원, 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상담전문가, 성폭력 상담전문가, 디지털성범죄 대응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⑤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고충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3.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징계요구
 4.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5. 기타 고충상담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조사위원회) ① 센터장은 사건의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안의 중대성 또는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조사위원은 사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과 해당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재조사위원회) ① 재조사가 청구된 사건의 재조사 개시 여부 및 재조사 처리를 위하여 재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해 사건의 조

사 또는 심의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재조사위원회는 재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재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 처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 및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3. 사건 당사자와 같은 부서, 전공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5장 상담, 신고 및 조사

제22조(상담 및 신고) ① 대학 구성원은 서면, 전자우편,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이버 신고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④ 센터 이외의 본교 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의 처리 및 절차 안내) ① 센터는 상담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신고 및 조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접수 즉시 피해자 보호 필요성, 사건의 중대성, 긴급조치 필요성 및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접수 사실, 조사 개시 여부 및 향후 절차를 적절한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직권조사) ① 센터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다른 경로로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성고충 사건을 인지한 경우
2. 피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침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 ② 직권조사는 사건심의위원회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신고의 각하 및 종결)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각하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사건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3. 피신고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동일 사안이 종결된 경우
5. 당사자의 장기적 비협조로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각하하거나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사건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신고가 철회된 경우에도 센터는 사건의 중대성, 공익성 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27조(피해자 보호조치) ① 센터는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신고인과의 분리
2. 접근 및 연락 금지
3. 수업, 연구, 근무 공간 조정
4. 학습권, 연구권 및 근로권 보호
5. 출석, 휴가, 업무조정 등 보호조치
6. 상담, 의료, 법률 또는 외부 지원기관 연계
7.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대리인 또는 사건관련자에게는 신고, 상담, 진술,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2차 피해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조사방법) ① 센터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
 2. 진술서 제출 요구
 3. 자료, 문서, 전자정보, 녹취, 영상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4. 관계부서에 대한 사실 조회
 5. 현장조사
 6. 외부 전문가 자문 또는 참여
- ② 사건관련자 및 관계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센터는 다른 국가기관,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이 동일 사안을 조사 중인 경우 그 절차 종료 시까지 조사 진행을 조정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29조(절차적 권리보장) ①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는 사건관련자의 인권을 최
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배제, 보호조치, 비밀유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당사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④ 피해자는 피해사실,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징계요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조정 및 중재) ① 센터장은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 보호에 반하지 않는 범위
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성폭력, 스토킹, 권력형 사건, 디지털 성범죄 사건 또는 기타 조정이 부적
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필요 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31조(사건의 처리와 통지) ① 센터장은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
고 그 결과 및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③ 센터는 사건 종결 후에도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조치 및 징계 요구

제32조(조치) 센터장은 사건심의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또는 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할 수 있다.

1. 행위의 중지
2. 피해자와 피신고인 간 분리조치
3. 접근 또는 연락 금지
4. 사과문 제출 또는 사과 권고
5. 상담 또는 교육 이수 명령
6.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명령
7. 교내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8. 관계부서에 대한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9. 기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3조(징계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센터장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조사,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가중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조치 또는 가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재범인 경우
2. 행위자가 보호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행위자가 사건관련자에게 보복하거나 보복을 위협한 경우
4. 행위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5. 사건관련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조사 활동을 방해한 경우

제35조(제3자의 조사방해 등에 대한 조치) 사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센터의 조사활동 및 조치 이행을 방해한 경우,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소속 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재조사, 권리보호 및 보칙

제36조(재조사) ① 당사자는 사건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조사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③ 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한다.
 - 1.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2. 조사 과정에서 검토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 또는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제37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신고, 상담, 진술, 조사협조, 대리 또는 기타 사건 처리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대리인 또는 사건관련자에게 해고, 징계, 전보, 차별, 불이익 평가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비밀유지) ① 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은 사건 처리와 법령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관련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자료관리) ① 센터는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적정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 기록의 열람, 보존기간, 폐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본교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 조사, 보호조치, 교육 및 제도개선 권고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전부개정) 종전의 「건신인권센터 운영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전부 개정된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센터가 수행한 상담, 조사, 교육, 보호조치 및 기타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사건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